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현행 환경부고시 폐지 건의(안)

의 안 번 호	79
------------	----

제 안년월일 : 1995. 12.

제 안 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주 문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현행 환경부 고시는 맑은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온갖 규제로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경제활동의 제약을 주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2. 제안이유

- 대청호 보다 훨씬 더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소양호나, 낙동강, 영산강 상류지역은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음
-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니라 행락객, 낙시꾼등이 버리고간 온갖 오물과 배설물이 원인임
- 환경부고시 90-15, 90-16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로 고시한 현행 고시는 각종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예외 조항없이 사용을 제한하여 법률과 상호 상충되어 있음
-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중앙부처에 철저히 외면당한채 규제항목만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고시의 성립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음
- 국가가 기본적인 환경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채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억제토록 강요하는 규제 중심의 기준 고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개정고시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3. 참고사항

별 첨 : 건의(안)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현행 환경부고시 폐지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님께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96년 총선과 '9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사회 안정이 중요한 때입니다.

'90년 7월 19일 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환경부고시(90-15, 90-16)호에 의거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불신감만 갖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의 피해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은 정든 땅과 집을 버리고 떠나가 인구가 감소되었고 댐주변 농경자는 면적이 협소하고 경사지가 많아 기계화영농이 불가능하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안개 발생일수의 증가로 농작물의 성장저해, 조숙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등 농가피해 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수등이 원만하여 오물, 부유물질의 퇴적기간이 길어 오물부페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탁류일수가 길어 주변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건강에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주위의 냉기류 현상이 일어나고 안개로 인한 대기공기의 다습으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청호는 II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90년 특별대책지정 당시 BOD 1.6mg/1, COD 2.4mg/1인 것이 5년동안 특별관리 했으나 거의 변함이 없으며, 질소·인, SS등은 오히려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청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은 특별대책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 뿐만 아니라 기존 수몰지역의 오염원을 방치한채 담수했던 사 실과 행락객과 낚시꾼이 버리고간 오물과 배설물들로서

국가가 환경관련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고 주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대청호 수질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폐 대청호 보다 훨씬더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소양호니, 낙동강, 영산강 상류지역은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댐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규제받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환경정책기본법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90-15, 90-16호로 고시한 현행 고시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 공장설립신고」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3조 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 등

각종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예외 조항없이 제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상호 상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시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 당한채, 오직 희생만을 강요당했고 규제 항목만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고시의 성립 그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폐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특별법 제정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대청댐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현행고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인바 오히려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15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언을 받아들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1 9 9 5. 1 2. 2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